



## 코스닥 활성화 방안, 소문난 잔치에 찾아본 먹을거리

▲ 주식시황  
Analyst 정다이  
02. 6098-6692  
daijeong@meritz.co.kr

- ✓ 코스닥 활성화 방안 발표. 큰 기조는 12월 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예고한 것과 부합
- ✓ 세부안 중 코스닥 벤처펀드 소득공제, 기관투자자 참여유인 제고정책에 관심
- ✓ 벤처기업, KRX300 편입주, Scale-up펀드 투자 대상인 저평가주 수급 효과 기대

### 11 일 정부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

정부 '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 논의. 11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의 후속 대책으로 세부 정책 구체화해 발표한 것

#### 후속 대책에 추가된 부분은 크게 여섯 가지

- 1) 개인투자자 참여유인 제고 정책: 코스닥 벤처펀드 활성화(개인투자자 벤처펀드 투자시 1인 연간 최고 300만원 소득공제)
- 2) 기관투자자 참여유인 제고 정책: 연기금 코스닥 차익거래시 증권거래세 면제, 벤치마크 지수 변경 및 코스닥 투자 위탁운용 유형 신설 권고, 신규 벤치마크 지수 개발과 ETF 등 다양한 상품 유도, 3천억원 규모의 코스닥 Scale-up펀드 조성, 저평가 코스닥 기업에 집중 투자자 유인 확대, 상장요건 전면 개편, 풋백옵션 면제
- 3) 코스닥 시장 건전성, 신뢰성 강화: 상장 실질심사 요건 확대, 상장주관사 보호예수의무 강화
- 4)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 및 혁신적 플레이어 육성: 코넥스, 코스닥기업 투자정보 확충산업, 중소기업 주식 장기 보유시 증권사 건전성 규제 완화, 사모증개 전문 증권사 신설
- 5) 기업경영 정보 투명성 및 효용성 제고
- 6) 기관투자자, 소액주주를 통한 시장규율 강화: 기관투자자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활성화, 새도우보팅 제도 폐지 및 소액주주 주총 참여 독려로 소액주주의 경영진 경제기능 활성화, 기업지배구조 공시 단계적으로 코스닥 상장사에도 적용

#### 새롭게 고민해 볼 투자 아이디어

코스닥 기업 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1), 2), 4), 6)번 항목으로 보임. 규정 개정을 통해 시행 가능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수급 효과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

기관 신규 상품 개발 활성화로 수혜볼 수 있는 벤처기업, KOSDAQ 중형주 중 KRX300 편입 가능 종목, Scale-up펀드 조성으로 수급효과 기대해 볼 수 있는 소형 저평가주

개인투자자 참여 제고 정책  
벤처기업투자신탁펀드 투자시  
인당 최대 300만원 소득공제

11일 발표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 중 눈여겨 볼 첫번째 정책은 개인투자자 시장 참여 유인 정책. <코스닥 벤처펀드>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에게 소득공제 (투자금의 10%) 혜택 부여하는 정책으로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신탁재산의 50%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에 투자하는 신탁에 투자금의 10%를 소득 공제해 주는 <벤처기업투자신탁 소득공제> 제도는 새로운 제도는 아님. 그러나 운용 요건 및 세제혜택 요건이 까다로웠기 때문에 관련 펀드도 가입자도 제한적이었음. 1997년 도입되었으나 2016년 사모펀드 1개만 신설

기존 벤처기업투자신탁펀드  
운용요건 까다로웠음. 50% 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해야하고  
투자액이 기업공개, 유상증자에  
한해야 하기 때문  
그러나 50%의 비중

- 1) 벤처기업 신주 15%
- 2) 코스닥 상장 벤처기업  
신주나 구주에 35%

투자 가능하도록 운용기준 바뀜

공모물량 우선배정 혜택 신설

기존 세제혜택 요건은 1)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및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2) 통장에 의해 거래될 것, 3) 펀드 설정일부터 반년 이내에 펀드 재산의 50% 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하되 투자액이 기업공개(IPO), 유상증자에 한해 까다로웠음

그러나 3)번에 해당하는 운용 요건을 1) 신탁재산의 15%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에 투자, 2)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 코스닥 상장 중소, 중견기업 신주(증자나 합병으로 신규로 주식 발행해 최초의 결산기가 지나지 않은 주식), 구주에 35% 투자 가능하도록 완화

또한 코스닥 투자 비중이 50% 이상인 코스닥 벤처펀드에 공모주 물량의 30%를 우선 배정해 다른 기관 및 펀드 대비 혜택을 제공. 현재 공모주 배정 비중은 우리사주 20%, 일반투자자 20%, 하이일드펀드 10%, 기관투자자 50%인데, 정책 적용 시 우리사주 20%, 일반투자자 20%, 하이일드펀드 10%, 기관투자자 20%, 코스닥 벤처펀드 30%로 변경

표1 벤처기업인증제도

벤처기업 정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조 2에 의한 기술 및 경영혁신에 관한 능력이 우수한 중소기업 중 벤처확인 유형별 요건을 갖춘 기업

벤처유형	기준요건	확인기관
유형1 벤처투자기업	1.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이상일 것 단, 문화상품 제작자 자본금의 7%이상 ※ 벤처투자기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투자전담회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2.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한국벤처 캐피탈협회
유형2 연구개발기업	1.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필수) 2. 업력에 따른 아래기준에 부합할 것 창업 3년이상 기업 : 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별도 기준 이상일 것 창업 3년미만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연구개발비비율 적용제외)3. 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확인기관] - 기술보증기금, -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업성평가기관] - 기술보증기금 - 중소기업진흥공단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
유형3 -기술평가 보증기업 -기술평가 대출기업	1. 기보 또는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2. 기보의 보증(보증가능금액 포함) 또는 중진공의 대출(대출가능금액 포함)을 순수신용으로 받을것 ► 기보 :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 중진공 : 중소벤처창업자금/개발기술사업화자금/신성장기반 자금중 신성장유망 지식서비스 관련 자금 기보, 중진공 공통 : 개정법 시행일(06.6.4)이후 보증 및 대출에 한함 3. 상기 2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 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①창업후 1년 미만 기업: 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만원 이상(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②보증금액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총자산대비 비율 적용배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유형4 예비벤처기업	1.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자 2. 상기 해당자의 기술 및 사업계획이 기보, 중진공으로 부터 우수한 것으로 평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자료: 기술보증기금, 메리츠증권리서치센터

## 수혜 기업

1. 벤처기업 해당 코스닥 기업
2. 코스닥 기업 중 7년 내 벤처기업에 해당된 적 있는 기업

소득공제 세제혜택 이전 대비  
늘어(이전 연간 최대 240만원, 현  
정책 연간 최대 300만원)

코스닥 벤처펀드 시장에 기관투자자의 참여 확대로 코스닥 상장 기업 중 벤처기업에 해당되거나, 7년 내 벤처기업에 해당된 적이 있는 기업의 투자 매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구간이 제한되지 않았고, 세제 혜택도 연간 최대 300만원으로 늘어나 펀드 신규 설정과 판매로 인한 수급효과 기대해 볼 수 있음

참고해 볼 수 있는 사례 두 가지는 2008년 장기주식형펀드 소득공제(가입기간 2008년 10월 20일~ 2009년 12월 31일), 2014년 소득공제 장기펀드(가입기간 2014년 3월 17일~2015년 12월 31일) 장기주식형펀드 소득공제 제도는 2008년 정부가 중시 안정 대책으로 내놓았던 펀드 세제 지원안으로, 개인투자자가 국내 주식형 펀드에 3년 이상 적립식으로 가입하면 첫해 납입액의 20%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었음. 당시 연간 1,200만원(분기당 300만원)의 가입 한도가 있었음, 연간 최대 240만원 혜택. 소득공제 장기펀드 역시도 주식 시장 건전한 발전을 목표로 정부가 도입한 제도로 연간 총 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5년 이상 가입할 경우 혜택 제공. 연간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혜택. 최대 납입액 600만원, 연간 최대 240만원 혜택

코스닥 기업 중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은 중소, 중견 기업 중 7년 내 벤처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 코스닥 벤처기업부(기존 벤처기업 중 기술력 인정 기업 또는 거래소가 선정하는 히든챔피언 대상기업 해당)와 신성장기업부(신규상장 기업 중 상장특례 적용 기업-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참고해 볼 수 있음

표2 코스닥 벤처기업부에 해당하거나 7년 이내에 벤처기업부에 해당된 적 있는 기업 상위 50개 (십억원)

종목명	섹터명	시가총액	종목명	섹터명	시가총액	종목명	섹터명	시가총액	종목명	섹터명	시가총액
셀트리온	건강관리	36,309.3	제낙스	소재	681.1	인터로조	건강관리	428.9	민앤지	IT	342.3
메디톡스	건강관리	2,663.7	미래컴퍼니	IT	678.8	내츄럴엔도텍	건강관리	424.9	메지온	건강관리	339.5
휴젤	건강관리	2,451.1	파마리서치	건강관리	653.2	에머슨퍼시픽	경기소비재	419.8	에스엠코어	산업재	335.0
셀트리온제약	건강관리	2,160.4	나스미디어	경기소비재	634.7	바디텍메드	건강관리	415.9	삼표시멘트	산업재	333.9
코미팜	건강관리	2,084.8	텔셀네트컴	IT	601.6	테라젠이텍스	건강관리	411.3	리더스코스	경기소비재	329.2
차바이오텍	건강관리	1,857.9	에스티팜	건강관리	599.8	와이아이케이	IT	399.8	SFA반도체	IT	326.6
컴투스	IT	1,614.7	제이콘텐트리	경기소비재	585.2	레고켐바이오	건강관리	399.7	바이넥스	건강관리	320.9
SKC코오롱PI	소재	1,323.0	서부T&D	산업재	580.2	모다이노칩	IT	396.6	한스바이오	건강관리	314.5
웹젠	IT	1,122.9	휴온스	건강관리	557.7	메카로	IT	390.8	와이솔	IT	313.6
톱텍	IT	1,118.4	동국제약	건강관리	552.2	연우	소재	386.2	NHN한사결	IT	311.4
고영	IT	996.3	비엔트	IT	544.3	원익QnC	IT	383.8	브이원텍	IT	310.9
나노스	IT	981.7	인바디	건강관리	538.5	RFHIC	IT	382.3	큐렉소	경기소비재	305.1
엘엔에프	IT	968.4	녹십자랩셀	건강관리	504.5	뷰웍스	건강관리	379.1	테라세미콘	IT	302.9
지트리비앤파트너스	산업재	940.5	파트론	IT	504.2	휴메딕스	건강관리	376.8	SKC솔믹스	IT	295.5
콜마비엔에이치	경기소비재	938.0	KG이니시스	IT	497.7	프로스테믹스	건강관리	376.7	알테오젠	건강관리	285.6
씨젠	건강관리	930.0	게임빌	IT	484.8	SD생명공학	경기소비재	372.9	비츠로셀	IT	284.1
케어젠	건강관리	905.6	유진테크	IT	465.2	셀바이오텍	건강관리	363.3	넵튠	IT	282.8
더블유게임즈	IT	886.8	오스코텍	건강관리	461.9	테크윙	IT	353.3	큐로컴	IT	281.5
메디포스트	건강관리	874.6	다원시스	IT	455.6	네오팜	경기소비재	350.7	인선이엔티	산업재	278.4
비에이치	IT	853.7	넥슨지티	IT	452.8	마크로젠	건강관리	349.9	미투온	IT	277.8
에코프로	소재	826.2	앱클론	건강관리	447.4	제이브이엠	건강관리	346.9	HB테크	IT	272.9
리노공업	IT	813.9	테고사이언스	건강관리	444.3	야스	IT	346.5	코리아나	경기소비재	271.6
티씨케이	IT	785.7	대화제약	건강관리	440.1	JW신약	건강관리	346.3	하림	필수소비재	270.0
CMG제약	건강관리	745.9	동화기업	산업재	437.2	시노페스	IT	345.9	위닉스	경기소비재	268.3
테스	IT	688.9	아모텍	IT	433.6	동국S&C	산업재	345.7	이엠텍	IT	266.6

자료: KRX, WiseFn,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

### 기관 투자자 참여 제고 정책

기관투자자의 코스닥 투자 유인 확대 위해 코스닥 차익거래시 증권거래세(현 0.3%) 면제, 연기금 기금운용평가지침 개선(운용상품 집중도 배점, 현 5점에서 확대), 연기금 벤치마크 지수 변경 및 코스닥 투자형 위탁운용 유형 신설, 신규 벤치마크 지수 개발 및 다양한 상품 출시 유도, 총 3천억원 규모의 코스닥 Scale-up 펀드 조성

이중 12월 발표된 2018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내용은 연기금 벤치마크 지수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코스닥 Scale-up 펀드에 관한 내용

#### 2월 5일 코스피, 코스닥 종합

대표 통합지수 발표 예정

#### 6월 중소형주식 성장성 투자 펀드

코스피, 코스닥 중소형주 개발  
발표

거래소 2월 5일 코스피, 코스닥 종합한 대표 통합지수 출시, 6월 중소형 주식의 성장성에 투자할 수 있는 코스피, 코스닥 중소형주 개발 계획 발표

거래소가 발표한 코스피, 코스닥 대표 통합지수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음

- 1) 심사종목 선정: 코스피·코스닥 종목 통합, 시가총액 상위 700위 이내, 거래대금 순위 85% 이내인 종목으로 심사종목 선정(관리종목, 외국주, 뮤추얼펀드, 페어퍼컴퍼니 등 펀드 운용이 어려운 종목은 제외)
- 2) 평가대상 선정: 재무요건(자본잠식)과 유동성(유동비율 20% 미만) 요건 추가, 총 9개 산업군별 평가대상 선정
- 3) 섹터별 배분: 산업군별로 누적 시총 80% 이내(또는 순위 상위 30%), 거래대금 상위 80% 이내에 해당하는 종목을 우선 선정(상장 6개월 이내 종목 제외)하고 대형주 특례(상장 6개월 이내 종목 중 시총 상위 100위 이내) 등을 적용해 총 300종목 선정

거래소가 KRX300 종목을 구성해 본 결과, 유가시장에서 232종목, 코스닥시장에서 68종목이 선정. 종목수 비중은 각각 77%, 23%이고 시총 비중은 93.5%, 6.5%로 추산. 매년 6월과 12월 정기변경 실시하며, 턴오버 비율 1~4%로 안정적일 것으로 기대

표3 지수별 섹터별 비중

	KRX	KRX300 (추정)	KOSPI	KOSPI200	KOSDAQ	KOSDAQ (셀트리온 제외)	KOSDAQ 150	KOSDAQ150 (셀트리온 제외)
IT	33.0%	<b>33.3%</b>	33.3%	36.1%	31.3%	35.7%	21.6%	27.6%
경기관련소비재	15.2%	<b>14.8%</b>	15.4%	14.9%	14.2%	16.2%	11.7%	14.9%
금융	11.0%	11.6%	12.7%	12.1%	1.5%	1.7%	0.0%	0.0%
산업재	12.1%	11.6%	12.9%	11.8%	8.0%	9.1%	5.4%	6.9%
소재	9.2%	<b>8.8%</b>	10.2%	9.9%	4.0%	4.6%	4.0%	5.1%
건강관리	9.8%	9.9%	4.5%	4.2%	37.7%	29.0%	54.6%	42.0%
필수소비재	3.5%	<b>3.5%</b>	3.8%	3.5%	2.4%	2.7%	2.2%	2.8%
전기통신서비스	2.0%	2.2%	2.3%	2.5%	0.3%	0.4%	0.5%	0.6%
에너지	2.2%	2.3%	2.5%	2.7%	0.4%	0.4%	0.0%	0.0%
유저리티	1.9%	1.9%	2.3%	2.2%	0.1%	0.1%	0.0%	0.0%

자료: WiseFn,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주: 1),2) 방법론 사용한 리스트로 구성해 시가총액 가중

**코스닥 Scale-Up 펀드**

혁신기업 성장을 위해 저평가된 코스닥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증권 유관기관(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 성장금융 등) 공동으로 약 1,500억원 출자, 민간자금 1,500억원 출자 받아 3,000억원 규모의 코스닥 Scale-Up 펀드 조성 계획

저평가된 코스닥 기업의 기준은 코스닥 종목 중 시가총액 하위, 기관투자자 비중 낮은 종목, 3년 이내 자본시장을 통해 신규 자금 조달 하지 못한 기업, 기술특례 상장 및 성장잠재력 높은 기업 등의 조건 감안해 결정키로.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음

**Compliance Notice**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1월 12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8년 1월 12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1월 12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정다이)

동 자료는 “금융투자회사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중 “제 2장 조사분석자료의 작성과 공표”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는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